

“건설의 미래비전 20·50” 실현을 위한
건설 유관 협회 협력 협약서

우리 건설관련 협회들은 “건설의 미래비전 20·50”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여 건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루하고자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국내 건설관련 유관 협회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건설의 미래비전 20·50”을 실현하기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 협력 내용: 건설의 미래비전 20·50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분야에 대하여 추진한다.
 - 비전 1: 전문성 고도화를 통한 건설엔지니어상 정립
 - 비전 2: 엔지니어의 역량 발휘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비전 3: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 이미지 개선
- 협력 사안: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상호 정보 공유와 교육개혁 업무 협력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협력
 - 홍보 및 국제관계 관련 협력

제3조 (효력 및 해지)

-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 본 협약은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이행의무)

각 기관은 합의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기관의 관련규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적용하되 세부 사항은 서로 협의한다.

제5조 (비밀유지)

- 본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상대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비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이 종료, 해지, 해제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

제6조 (운영)

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세부적인 협력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본 업무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9월



대한토목학회
회장 한만엽

한만엽



대한토목학회 부설 미래비전원
원장 장승필

장승필



교통영향평가협회
회장 조대식

조대식



교통투자평가협회
회장 김일중

김일중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상수

김상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김영윤



한국건설가설협회
회장 한영섭

한영섭



한국건설계측협회
회장 남순성

남순성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박종면

박종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김정호

김정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연태

김연태



한국건설안전협회
회장 한경보

한경보



한국기술사회
회장 주승호

주승호



한국도로협회
회장 김진숙

김진숙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이해경

이해경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회장 김진숙

김진숙



한국철도협회
회장 김상균

김상균



한국하천협회
회장 방승우

방승우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건기

이건기

“건설의 미래비전 20·50” 실현을 위한
건설 유관 협회 협력 협약서

우리 건설관련 협회들은 “건설의 미래비전 20·50”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여 건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고자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국내 건설관련 유관 협회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건설의 미래비전 20·50”을 실현하기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 ① 협력 내용: 건설의 미래비전 20·50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분야에 대하여 추진한다.
 - 비전 1: 전문성 고도화를 통한 건설엔지니어상 정립
 - 비전 2: 엔지니어의 역량 발휘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비전 3: 건설산업 및 엔지니어 이미지 개선
- ② 협력 사안: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상호 정보 공유와 교육개혁 업무 협력
 2.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협력
 3. 홍보 및 국제관계 관련 협력

제3조 (효력 및 해지)

-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은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이행의무)

각 기관은 합의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기관의 관련규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적용하되 세부 사항은 서로 협의한다.

제5조 (비밀유지)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상대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비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이 종료, 해지, 해제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

제6조 (운영)

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세부적인 협력사항에 대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본 업무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9월



대한토목학회
회장 한만엽

한만엽



대한토목학회 부설 미래비전원
원장 장승필

장승필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건기

이건기